

안녕하세요?

저희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지원 활동에 동참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국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숫자가 20만 명 수준으로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도 종전의 산재, 임금체불 등에서 결혼(혼인신고), 출산 등의 문제로까지 다양화되어가는 등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상적 문제의 하나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자 및 후원인을 모집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저희 (모임)은 지난 92년 5월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상담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은 관심있는분의 절대적 부족 속에서 몇몇의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급박한 각종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해 내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상담 요청은 나날이 양적, 질적인 면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체계로는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새로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지원 활동에 뜻이 있는 분들을 널리 찾기로 하였습니다.

본 (모임)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시간을 낼 수 있고, 영어를 조금 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동남 아시아쪽 언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더욱 환영)

한편, 시간을 내실 수 없는 분들은 (모임)의 활동을 후원해주시면 어려운 재정 형편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뜻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송금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뜻있는 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송해익 변호사님 10만원, 권오기님 2만원,

노영만 님 9만원 각각 후원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 락 처 Tel 02-795-5504 / Fax 02-749-6055

계좌번호 상업은행 106-07-052777 박석운 / 국민은행 822-0176-154 박석운

제 2 호

1997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하는

열린세상



- 기 획
- 상담사례
- 상담수기
- 동 향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127-1 우신빌딩 3층
전화 02-795-5504 FAX 02-749-6055

출입국관리 행정

하루에도 여러번 출국을 원하는 불법체류자에게서 전화가 온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이제 그만 자기나라로 가고 싶다면, 출국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상담하기 위해서이다. 그 가운데에는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낼 형편이 안되거나, 혹은 몸이 아파서 출국을 희망하는 상담도 상당부분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의 대답은 너무 궁색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정처리가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는 출입국관리직원에게 그 사람의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편지만을 써줄뿐.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불법체류 외국인은 취업이 불가능하며 비자만료기간이 지난 뒤 계속 한국에 체류했을시 체류기간에 의거해 벌금을 물게 되어있다. 원칙적으로 불법체류기간 1년당 대략 1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만 출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무부의 출입국관리행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불법체류자의 수는 거의 22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상당수는 3D업종에 종사하면서 우리경제의 숨은 일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특별한 숙련을 갖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취업사증(VISA)을 발급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단순 생산기능직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기술연수라는 명목아래 대량 유입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사실상 붕괴되었다. 표리부동한 편법이 판을 치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여 강제 출국 시키겠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천명하였으나 실체는 거의 실효성이 없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가운데 약 35%가 저임, 장시간 노동 및 법적 권리의 제한과 인권유린으로 인해 지정된 사업장을 이탈하고 있다. 그리하여 합법체류자인 산업기술연수생이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부러워함으로써 불법체류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외국인노동자가 '중소기업 인력난의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타인적 실제상황에서는 "단속과 묵인의 병존"을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출입국관리소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벌금부과정책은 부당하기 짝이 없다. 어떤 외국인의 경우에는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더 벌어서 벌금을 벌어서 오라고 다시 돌려보낸다. 이는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행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벌금없이 출국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출입국관리소에서는 그가 어디에서 근무했는지를 반드시 밝혀 사업주라도 벌금을 물리게끔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하루라도 빨리,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출국시켜야 할 법무부측이 도리어 이를 저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정부의 '애매한' 외국인노동정책은 비단 외국인노동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가에게도 경제적 손실 및 혼선을 입히게 된다.

초과체류자의 벌금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외국을 살펴보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자진 출국자는 벌금을 내지 않고 그냥 출국할 수 있다. 심지어 독일의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물론 비행기표 자금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불법체류자의 출국과정중 이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인권침해 역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경찰이나 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불법체류자들은 일단 보호소에 감금되어 몇일동안 조사 과정을 거치는데, 이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이 물의를 빚기도 한다. 조사를 위한 목적과 탈주 우려를 이유로 보호소에 감금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비밀비재하게 발생하는 욕설은 체처 두더라도(보호되고 있는 외국인이 상담소로 전화를 하는 도중에도 심한 욕이 들릴뿐더러, 심지어는 전화 도중에 전화를 끊어 버리는 일까지 있다. 이에 대해 출입국 관리사무소측의 말에 따르면, 너무나 많은 외국인이 오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에 기인한 사소한 실수라고 한다.), 보호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구치소로 이송, 감금하는 경우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최근에 한 외국인은 출입국사무소의 보호실에서 구치소로 이송되는 과정에 충분한 숙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치소 내에서 하루동안 식사 거부를 한 사례까지 있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호텔'같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긴 하지만, 좁은 장소에 남녀를 불문하고 갇혀 한 장소로 몰아넣고 그러모아 강제 감금하는 지금의 방식은 분명 잘못된 행정 처리로 보아진다.

특히 당장에 출국을 희망하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보호를 시키고 있는 출입국사무소측의 처사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출국심사가 필요한 그때그때 불러들여 조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면 출입국 사무소측의 주장, 즉 '불법체류자의 보호시설'이 좁다는 고민 역시 다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어느모로보나 자진출국하려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은 잘못된 것임에 틀림없고 당장 시정되어야 한다. 이는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벌금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 그리고, 출입국과정에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1) 어디 외국인 주저여 . . .

자 동차세일즈맨을 하다가 한국에 오게 된 시라지(26세, 스리랑카)는 한국에 온지 채 일년도 되지 않아 자신의 손가락을 잘리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기계사이에 떨어진 부품을 꺼내려다 그만 손가락이 끼여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장의 반응은 전혀 단판이었다. 오히려 시라지가 기계를 고장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에 대한 보상은 커녕 오히려 시라지가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차례 사장에게 기계의 고장은 기계노후에 의한 것이며, 기계를 다루는데 있어 제대로 교육을 하지 못한 것에 기인된 것임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시라지는 작업과정중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그러나 한사코 우리의 주장을 거부한 까닭은 실제로 다른데 있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 사업장은 5인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시라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사장과의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고 결심하였다. 그 사업장 역시 여러 면에서 좋은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시라지에게 해줄만큼은 다 해주었다.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게 해주었으며, 기계고장에 대한 배상은 요구하지 않겠다. 심지어 이전에 한국인노동자 역시 손가락이 잘렸을 때, 치료만 해주었는데도 고마워했다. 하물며 외국인주제에 뭘 더 바라느냐!”

결국 상담소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함으로써 사업장이 5인이상 근로자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산재보험 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것과 불법외국인노동자를 고용했다는 이 두가지 사항 때문에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와 벌금을 내게 된다.

이후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사장은 열성적으로 시라지를 찾고 있다. 소문에 의하면 시라지가 갈만한 곳은 모두 찾아다녔다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상담소로 전화하는 그에게 아직도 외국인 역시 당신과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깃들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2) 오죽하면 도망갔을까요!

한 달 월급으로 75만원을 받기로 한 투픽(25세, 알제리)은 채 한달도 채우지 못한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사장은 시킬 일이 이제 없으니 나가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내몰아치면서 그에게 그동안 일한 임금조차 주지 않았다.

영문도 모른채 쫓겨난 투픽은 그나마 일한 임금을 받고 싶다고 우리 상담소 문을 두드렸다. 그것도 거의 석달이 지나서야 온 것이다.

재빨리 회사로 전화를 걸었는데 회사 사장의 말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다행스러웠다.

“내가 쫓았다구요? 천만에, 제 발로 나가놓고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죠.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지금은 형편이 조금 안 좋으니, 이 달말쯤 전화 주시고 오시면 투픽 임금 책임지고 주겠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나 하면서도 우리는 투픽문제는 쉽게 풀릴것이라고 생각했다. 도리어 투픽에게 너의 사장 나쁜 사람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마냥 사장이 약속한 날 짜까지 기다리기만 하였다. 투픽 역시 희망을 품은채 상담소를 찾아와 친구도 만나면서 약속날짜를 기다렸다.

드디어 사장과 약속한 날, 전화를 건 우리는 아연질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회사 전화는 끊긴 상태였던 것이다. 부리나케 찾아 가 본 회사는 철커덩 문이 닫혀 있었다. 수소문 해본 결과, 그 사장은 우리에게 한 똑같은 수법으로 한국인노동자에게도 임금을 주지않은 채 도망가버린 것이다.

약 2시간정도 걸려서 어렵게 찾아간 우리는 말문이 막혔다. 그날따라 부슬부슬 비까지 내리고 있는 터라 더욱 씩쓰레해진 표정을 짓고 있는데, 황량하기 그지없는 공장문앞에서 투픽은 눈물을 썩 닦으면서 하는 말,

“오죽하면 사장이 도망갔을까요? 잊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가 훨씬 마음 쓸쓸이가 넓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그 사장이 한없이 야속하고 미웠다. 머나먼 저 알제리까지 한국은 거짓말쟁이가 사는 나라임을 알게 된 셈이니까.

상당수기

홍희표(자원봉사자)

알 리와 나는 온양행 시외버스 안에서 서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서투른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했고 자신과 가족의 사진을 보여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는 속에서도 그의 눈에서는 두려움과 분노가 떠나지 않았다.

드디어 온양. 눈독길 저 멀리 보이는 한 건물을 가리키며 알리는 앞장서 걷기 시작했다. 나는 경찰이 있을지 모르니 최대한 주의해야 하며 여차하면 도망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수차례 말하고 다짐했다. 알리는 이라크에서 온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발, 두 발 계속해서 공장을 향해 내딛었다.

한 20여분 걸려 도착한 공장정문에서 한 아저씨가 우리를 보고는 뭐하러 왔느냐고 물었다. 사장님을 좀 뵙고자 서울에서 왔노라고 하니가 자기가 사장이니 따라오라고 했다. 그리고 경리가 외출중이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주위를 훑어보고 일단은 괜찮겠다고 판단하고 아래층에서 경리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혹 사장이 경찰을 부르지 않을까 염려되어 계속해서 경계해야 했다. 그러기를 이삼십여분. 드디어 경리라는 아가씨가 오고 그녀와 함께 사무실에 들어갔다. 사장은 “누구시더라?”하는 투로 우리의 신원 설명을 요구했다. 좀 황당했지만 다시 알리와 나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서울에서 갈 때는 이미 합의한 바에 의해서 체불된 임금만 받아오면 되는 줄 알고 있었던 터였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사장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결론은 너무도 뻔했다.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너무 허탈했다. 그 사장이라는 사람은 체불임금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계속해서 물었다. 나는 “어려운 사정은 알지만 일한 만큼의 대가는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 올 때는 이미 다 이야기 된 것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나직 하게 물었다. 그러나 사장은 핏발을 세워가며 알리를 배신자로 몰았다. “절대 돈을 줄 수 없다. 나와 내 아들이 얼마나 가족처럼 잘 보살펴 주었는데 그렇게 도망가서 일에 차질이 빚어지게 할 수 있느냐?”며 따졌다.

그러나 사장이 돈을 안 주겠다고 내세운 더 큰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다. 바로 근로계약서였다. 계약서에 따르면 일정기간(1개월)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중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었고 거기엔 알리의 지장이 찍혀 있었다. 사장은 “각서(근로계약서를 사장은 각서라고 불렀다.)가 여기 이렇게 있지 않느냐”고 더욱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었다. 사장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알리는 나에게 무슨 일이냐며 계속 물었지만 나는 제대로 대답해 줄 수가 없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먹혀들 것 같지가 않았다. 결국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며 위반시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상의 처벌도 받게 됩니다.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체넘게 말하고 어안이 빙빙해 있는 알리를 이끌고 사무실을 빠져나오려는 참이었다. “이런 XX야, 이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온거냐?”며 잡아먹을 듯이 소리를 질러댔다. 허탈감과 분노에 휩싸여 우리는 터벅터벅 공장을 나섰다. 조금 후 사장이 자기의 차를 몰고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알리는 그를 보더니 애원하는 어조로 멈춰달라고 이야기를 좀 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사장은 마치 우릴 치어 버릴 듯이 달려와서는 횡하니 지나가 버렸다. 나는 알리에게 연신 “I am sorry”라고만 대답했다.

그 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사장이 나의 경고성 발언에 움찔하여 일이 잘 해결되었지만 참 서글픈 기억으로 남는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고충과 돈 좀 벌어보겠다고 무작정 ‘잘 사는 나라 한국’으로 온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한 WANTED



● 노동부 국내 외국인력 20만선서 관여

노동부는 25일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더라도 전체 외국인 근로자수를 급격히 줄이지 않고 현재의 20만명 선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전체 임금근로자의 1%규모인 10만명 선에서 억제한다는 외국인 관리목표가 2배로 상향 조정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동부는 대신 현재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61%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양성화한 뒤 단계적으로 정식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 국내 산업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이른바 3D 업종의 영세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쓰지 못할 경우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면서 「우리 산업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외국인근로자 수를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말 현재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21만4백94명으로 이들은 불법체류자 12만9천54명, 합법취업자 1만3천4백20명, 산업및 기술연수생 6만8천20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외국인 근로자 수는 지난 95년7월 정부의 역제목표선인 10만명을 처음 넘어섰고 그후 불과 2년도 안돼 배 이상 늘어나 외국인 인력관리에 큰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7/05/26 경향)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임금 격차 상은 없다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방침과 관련, 정부는 이번주부터 공청회를 열어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를 밟은 뒤 법률내용 정리작업에 들어간다. 정부의 법률 시안을 토대로 고용허가제가 가져올 변화를 전망해본다.

▼임금 등 인건비= 「외국인력을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면 그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가」.

고용허가제 도입 방침에 대해 상당수 영세업체 사업주들이 걱정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오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 외국인을 근로자로 인정한다 해서 임금 복리후생비 등 근로조건을 내국인과 똑같이 대우해줘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출신국가 숙련도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임금 복리후생비 등 근로조건을 결정, 1년단위로 계약하게 된다. 고용시장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숙련도가 낮은 단순직 근로자의 임금 총액은 고용허가제 도입 전에 비해 낮아질 수 있다.

▼근로자 도입 방법=재경원은 당초 외국인력 도입창구를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와 산업인력공단을 포함한 공공단체로 창구를 개방키로 했다.

즉 고용허가제가 되면 중소기업 사업주 본인이 외국에서 직접 원하는 직종의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중기협 등 여러 공인단체중 하나를 택해 인력을 소개 받을 수 있다.

▼노동3권 보장=정부는 당초 외국인근로자의 노동3권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계약직 근로자이므로 단체행동 등 노동3권보장에 따른 부작용은 거의 없을텐데 굳이 제한규정을 뒤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최근 중기협 등이 고용허가제 반대 명분으로 「노사갈등」 우려를 부각시킴에 따라 정부도 「그렇다면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불법취업자 문제=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불법취업자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거역의 커미션을 주고 연수생으로 입국한뒤 연수생 자리보다 임금이 더 높은 다른 사업장으로 이탈, 불법 취업하는 악순환은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이미 국내에 체류중인 12만9천여명의 불법 취업자는 양성화돼 최장1년정도 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97/05/26 동아)

● 정부 외국인 고용허가제 다시 추진... 통산부 등은 강력반발

외국인근로자들이 산업연수생이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신분보장과 함께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2일 오전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

재경원과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의 골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적용하고 1년단위의 계약기간으로 최장 3년까지 국내취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외국인 단순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기업은 정부가 정한 업체별 고용상한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창구도 기협중앙회에서 노동부 산하의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차액중 일부를 고용분담금으로 징수, 기금을 조성한 뒤 중소기업 작업환경개선 등에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도입에 관해 빠른 시일내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복리후생비가 크게 늘어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통상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등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도입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07/05/22 동아)

● 외국인 연수생 도입 대폭 억제

정부는 올해 외국인산업 연수생 도입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실업률 상승에 따른 국내 고용여건의 악화와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 및 이에 따른 부당 노동행위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을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일반 제조업분야에는 연수생을 새로 도입하지 않고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등 대형

국책사업 공사현장에 투입할 2천5백명정도만 들어오도록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엔 3만 명 도입이 허용돼 약 절반이 들어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3D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신규인력을 배정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배정 받을 수 있다.

지난 94년부터 도입이 허용된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올 4월말 현재 약 5만8천명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애초 배정된 직장을 이탈한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97/05/15 중앙)

● 건국대 외국인 근로자 위한 '일요대학' 개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 교육프로그램이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건국대에 개설된다.

건국대 사회과학교육원(원장 오성삼.50)은 오는 9월부턴 수도권 지역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요대학'을 개설, 한국어 강좌 등 한국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일요대학은 한글과 한국어 강좌는 물론 한국 문화와 역사, 전통예절, 한국 노래등을 위주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간 동안 진행된다.

또 특별 프로그램으로 국내 고궁과 문화유적지, 산업체 견학, 외국인근로자 백일장,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이 마련되고 대회 수상자에게는 고국방문항공권이 제공되는 등 다채롭게 꾸며진다.

수강생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각 산업체 대표들의 추천을 받아 1백명 내외로 선발되며 강의는 교수들의 무보수 자원봉사로 이뤄지므로 수업료는 전액무료이다.

오원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노동인력 시장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릴 교육프로그램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강좌를 개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97/05/21 조선)

●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 양성화... 기간내 신고면 세면인가

노동부는 20일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지난 92년 산업연수생제도 도입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독점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모집권한을 중소기업에 다시 돌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각 기업은 공공단체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소개받거나 원할 경우엔 직접 해외현지에서 원하는 직종의 숙련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미 국내 중소기업체에 불법취업중인 외국인 불법체류자(12만명 추산)에게는 2개월간의 신고기간을 두어 양성화할 방침이다.

불법취업자가 신고기간내에 고용허가를 받으면 입국시점에 따라 6개월~1년간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으로 국내에 머물며 더 일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또 기존의 산업연수생들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연수생 신분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의 입법여부를 결정한다. (97/05/21 동아)

● **외국인 노동자 대고 약 2만명... 법규개정 시급**

대구지역에 취업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2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불법체류 및 사업장이탈의 사례가 늘고 있어 관계법규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대구 경실련이 개최한 시민포럼 '외국인 노동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원 대구대교수(경제학과)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는 내국인의 60~70%에 머물고 이 때문에 작업장을 이탈해 조건이 나은 곳을 찾아 옮겨 다니지만, 이 경우 불법체류가 되어 정당한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된다"며 "이의 해결을 위해 노동허가제를 축으로 하는 외국인노동자 및 그 정책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태환 대구 경실련 외국인근로자센터소장은 "대구의 외국인 노동자는 주로 중소기업에 산업기술 연수차 와있는 경우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채 월 20~30만원씩의 연수비를 받으며, 의료보험과 신재보험 등의 혜택에서 제외돼 있다"고 실정을 밝혔다. (97/05/02 영남일보)

● **'외국인 여성근로자들은 더 눈물겹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29일 오후 종로 5가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개소 1주

년기념 심포지엄을 갖고 외국인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선교적 과제를 모색했다.

이 날 손광운변호사는 「외국인근로자의 국적취득에 있어 일본의 경우 부계혈통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양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젠 헌법과 국제인권 협약에 합치되는 국적법의 개정을 논의할 단계가 됐다」고 지적했다.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성근로자가 결혼할 때는 남자가 국적을 취득할 수 없고 자녀도 무국적 상태가 된다.

또 아시아여성신학원원장인 한국염씨는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여성노동자는 전체외국인노동자의 30%로 6만명가량이며 이들은 성차별에 의해 남자의 국인들보다 적은 월급을 받고 있으며 성폭행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와 외국인을 위한 이삭남기기 법, 과부 고아 외국인 레위인을 위해 3년마다 드리는 십일조법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하며 외국인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제정에 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97/05/01 국민일보)

● **외국인노동자 월평균 64만9천원 벌어**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월 평균 64만9천원을 벌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인 19만4천원을 생활비 등으로 쓰고 나머지는 고국에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실장 신종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초까지 외국인 노동자 2백9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고향에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는 본인이 직접 은행을 이용한다는 대답이 35.8%로 제일 많았으나 송금 브로커를 이용한다는 응답도 22.7%를 차지, 송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84.6%가 현재 취업을 한 상태인 반면 15.1%는 건강과 관계당국의 단속, 구직난 등으로 실업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은 아플 때 대개 약국에 가서 약을 사먹으며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경우는 17.7%에 머물러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97/02/18 한겨레)

모
임
소
식

◆ 3월 22일 오후 7시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노조 간부 세분(타타스 외 2인)이 저희 상담소를 방문, 약 30여명의 인도네시아 외국인과 함께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들 노조 간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상황과 애로점을 듣고, 또한 국내 거주 인도네시아인들은 고국의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 5월 21일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하는 세상' 주점이 서울대 중앙도서관 옆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상담소 자원 봉사자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함께 참여하여 대학신문사의 열렬한 인터뷰 요청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스리랑카 전통음식 '커틀렛'은 단 몇시간만에 품절되었고, 미얀마 전통음식인 '코코넛 국수'는 배고픈 이들을 오랜시간 기다리게 하였으나 재정마련에는 하지만 은동네 사람들이 함께 어울어진 이 '세상'에서 역시 우리는 같은 느낌을 공유하는 사람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또 다시 '세상'을 열 수 있기를 기원하며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새로운 자원 봉사자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자원 봉사자는 여경화(키틀릭대), 양홍석(고려대), 강택진(서울대), 김희범(숭실대), 한국어강좌팀에 최미선(서강대)입니다.

◆ 그간 수고해주신 자원 봉사자 장종철과 김재곤(일명 J.K.Kim) 수고 많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김재곤은 15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여전히 본 <모임>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한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알고 계시면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판례 소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됨으로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

96년 12월 4일 서울지방법원 외경부지원에서는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체류 노동자 모하메드 압둘 칼렙이 (주)서안물산 상대로 낸 퇴직금 징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주)서안물산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냈으나 97년 4월 4일 2심 재판부 또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불법체류 노동자들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 셈이다(아직 대법원판결이 남아있지만 전망은 밝은 편이다).
▶▶ 사건번호 96나55661